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박주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74
----------	------

발의연월일 : 2023. 10. 10.

발의의원 : 박주용 의원,

신달호 의원, 최재규 의원

1. 제안이유

상위법령으로 지역사회 치안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활동을 활성화하고 달성군민의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2조~제3조)
- 나.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정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6조)
- 다. 지도·감독 및 환수·지원중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8조)
- 라.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2조제2호를 따른다.
3. “달성군자율방범연합대”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4. “자율방범대등”이란 자율방범대와 달성군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장비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법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자율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등 보험 가입비
6.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7.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비
8.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자율방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① 자율방범대등이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 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등의 정관
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5.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6.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법일지
7.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법순찰 등 활동사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정산)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등은 분기 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30일 이내에 군 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할 경찰서와 지도·감독을 위한 자료와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및 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하거나 지원금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경비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포상) ①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 자율방범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등 또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해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지원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0000. (0/0분기) 지원금 신청서}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1. 사 업 명 :

2. 사업내용 :

※기간, 장소, 사업내용 등 기재

3. 추진계획 :

4.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원)

구분	항목	계	신청금	산출기초
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별지 제2호서식】

{0000. (0/0분기) 지원금 정산서}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예산과목					수령액	집행액	잔액	이자 수입
정책	단위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실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일 자	수령액	지출액	내 용	잔 액
합계				

※ ○○ 자율방범대·연합대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일자별 지출결 의서(대장, 총무, 회계담당 3인 결재) 작성 후 이면에 영수증 첨부

년 월 일

지출관 : ○○자율방범대·연합대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지 출 결 의 서

		담당자	총무	대장
제000호	결재			
지출과목 (비목)	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		지출일	0000.00.00.
지출금액	일금 한글기재 원정(₩ 숫자 기재)			
지 출 내 용				
사용처			지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 명 : ○ 일 자 : 0000.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별지 제4호서식】

조장	방법대장

○○자율방범대·연합대 방법일지

20 년 월

순찰일시	순찰 인원	순찰자		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죠평 활동 내용 등)	비고
		성명	서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	00명				

년 월 일

확인관 : ○○지구대장(파출소장)

(인)

【별지 제5호서식】

방법순찰 등 활동사진

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	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
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	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2.4.26. 제정, 2023.4.27.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하 “시·도경찰청장 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11조(포상)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중앙회·연합회·연합대 설립 등)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군·구에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4.25. 제정, 2023.4.27.시행)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법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